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5. 25 선고 2020가단50622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범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원석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

담당변호사 김민지, 박현식

변 론 종 결 2021. 3. 23.

판 결 선 고 2021. 5. 2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소외 D[E생]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18 지분에 관하여 2019. 11.

30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(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D을 대위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구한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채권

D은 사기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고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291, 7904(병합), 8268(병합), 2019고단3194(병합), 5289(병합), 2019초기3691, 4338], 위 법원은 2020. 1. 31. D을 징역 10개월 및 징역 2년 2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배상신청인 원고에게 40,910,000원, 배상신청인 F에게 82,595,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다. 이에 D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(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30), 항소심 법원은 2020. 8. 21. 징역 10개월 부분 및 배상명령 부분은 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. 2020. 10. 30.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관계

(1) 망 G는 2019. 11. 30.경 사망하였고,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, 자녀인 피고들 및 D이 있다.

(2)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 중 1/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.

(3) H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. 1. 6. 접수 제2499호로 2019. 11. 30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원인

가.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

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.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D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.

나.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

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D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, 원고는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.

3.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(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다28299판결 등 참조).

나. 을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및 서울 용산구 I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D의 동의 없이 D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권한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① 망 G 사망 당시 D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, H 및 피고들에게 상속포기 의사를 밝혔다. D은 대리인 J을 통해 상속포기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.

② H과 피고들은 법무사인 K에게 D의 상속포기 의사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을 설명하고, 이와 관련된 등기업무 등을 위임하였다.

③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과정에서 H 및 피고들 뿐만 아니라 D까지 명의자로 포함된 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어 첨부되었고, 그 기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다.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(민법 제1026조 제2호, 제1019조 제1항), D이 위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,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지분만큼 상속하여 공유하게 되어 H이 $1/6 (= 1/2 \times 3/9)$ 지분, 피고들 및 D이 각 $1/9 (= 1/2 \times 2/9)$ 지분씩 상속받게 되었다.

라. 따라서 D에 대한 배상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,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$1/18$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(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,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)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경정원

별지

1. 서울 강남구 L 대 330.7㎡

2. 서울 강남구 L 지상

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슬래브 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

1층 164.45㎡

2층 164.45㎡

3층 164.45㎡

4층 164.45㎡

5층 164.45㎡

지층 165.75㎡. 끝.

